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32 2020년 4월 23일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4월 3일,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20년 4월 6일

3. 상정일자

○ 제29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0년 4월 23일 상정, 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1. 제안이유

○ 인터넷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시민들의 서울교육참여 유도 및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의 활용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와 블로그, SNS 등과 같은 소셜 미디어까지도 포함하는 '인터넷 매체'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제명).
- 나. 조례의 목적을 홈페이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한 것에서 홈페이지를 포함한 인터넷 매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함(안 제1조)
- 다. "인터넷 매체"의 정의를 신설하고 다른 정의들도 개정에 맞도록 정비함. (안 제2조)
- 라. 운영 활성화 대상을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매체로 확대함 (안 제1 조, 안 제3조 ~제5조, 안 제7조, 안 제10조)
- 마. 미사용 용어, 어색한 표현, 띄어쓰기 등을 재정비함.(안 제1조 ~ 제10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0년 4월 3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 1432호로 제출되어 2020년 4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에서 스마트폰의 보급과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의 활용 등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통한 교육관련 정보의 제공과 공유가 중요해짐에 따라 홈페이지 외에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플랫폼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한 교육관련 정보의 제 공과 공유를 위해 홈페이지 외에도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채널, 유튜브, 브런치, 네이버포스트, 각종 어플리케 이션 등의 다양한 SNS 플랫폼을 활용하여 각종 교육정책 등을 홍보· 공유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은 인터넷 환경의 다변화에 발맞춰 전반적인 인터넷 매체의 운영에 대한 제도적 관리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인바, 급 변하는 IT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시의 적절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됩 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 1) 개정조문 체계
- 동 개정조례안은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 와 제4조 그리고 제5조에서 인터넷 매체의 운영과 정보 관리 그리고 게시물 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안 제6조에서 교육정책 참여 유도를 위한 인터넷 의견 교환 창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인터넷 매체이용자의 참여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인터넷 매체 이용자의 마일리지 부여와 사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정책메일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전반적으로 현행 조례의 주요 내용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새로운 용어의 정의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등의 수정사항이 반영되었는바,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개정조문별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 다양한 SNS 플랫폼과 어플리케이션 등을 포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에 따라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 화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2조제2호에서는 기존 '홈페이지' 이외에 SNS와 앱 등을 포함한 '인터넷 매체'를 새롭게 정의하였으며, 같은 조 제6조의 '정책고객'의 정의는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SNS 활용이 보편화되어 교육정책의 대상이 광범위해짐에 따라 안 제9조의 정책메일서비스의 대상을 별도의 '정책고객'으로 관리할 필 요가 없어진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인바, 인터넷 환경의 다변화를 반 영한 시의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 그 밖에 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는 정의규정에 따라 '홈페이지'를 '인터넷 매체'로 개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의 맞춤법을 정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교육청은 현행 조례 제8조에 따라 마일리지 제공 및 사용을 홈페이지에 안내하여 정책홍보 등을 위해 노력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서울교육소식 홈페이지 마일리지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마일리지 제도는 서울특별시교육 청교육연구정보원의 꿀박사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현재까지 마일리지 부여 내역]

□ 마일리지 제도 운영 현황

- 서울특별시교육청: 0건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1건
- □ 서울교육소식 홈페이지(http://enews.sen.go.kr) 마일리지 제도 운영 이력
- (2011.05) 마일리지 서비스 시행
- (2012.05) 마일리지 제도 개선(종류 및 적립기준 조정)
- (2016.10.) 마일리지 제도 폐지
- 2016년도 이전 마일리지 사용현황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문화상품권	4명	4명	5명	8명	1명	22명
문자발송	-	_	2명	1명	2명	5명

- 전체회원 중 마일리지 사용자 비율은 0.1%로 서울교육소식 홈페이지 특성상 참여를 통한 마일리지 이용 활성화 어려워 제도 폐지함.

□ 꿀박사 마일리지 제도 운영 이력

- (학생) 학기당 1000포인트 도달 시 "교육재능나눔확인증" 수여(이후 포인트 리셋)
- (교사지원단) 500포인트 도달 시 매월 5만원 수당 지급(이후 포인트 리셋)

예산 (단위: 천원)	2018년	2019년	2020년
교사지원단 수당지급	16,420	15,858	10,858

따라서 교육청은 마일리지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마일리지 이용실태 분석 및 현행 제도 운영의 효과성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안 제9조 정책메일서비스의 경우 현재 격주로 교직원을 제외한¹⁾ 일반시민에게 이메일로 뉴스레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실제 하이 퍼링크를 통한 교육청 홈페이지의 관련 정보 안내 정도에 그치고 있어

¹⁾ 교직원 대상 뉴스레터의 경우에는 교육정책 및 교육감 전달 사항 위주로 선정하여 내부메일을 통해 발송하였으나, 2020년 K-에듀파인 개편에 따른 시스템 문제로 공문게시로 한시적 대체 중임.

SNS 플랫폼과 같이 직관적이고 직접적인 정보제공과 비교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2)

[표] 인터넷 매체 운영 현황

인터넷 매체		연간 이용자현황 (단위: 명)				
종류	접근주소	운영기준	2018	2019	2020	
모바일앱	앱 명칭: 서울교육뉴스	다운로드수	2,863	2,148	2,114	
블로그	https://blog.naver.co m/seouledu2012	방문자수(누적)	6,356,622	8,359,701	9,219,396	
포스트	https://post.naver.co m/my.nhn?memberN o=511714	방문자수(누적)	2,675,968	3,270,881	3,432,452	
브런치	https://brunch.co.kr/ @seouledu	방문자수(누적)	373,867	746,490	797,304	
카카오스토리	https://story.kakao.co m/ch/seouleducation	구독자수	369,711	406,067	405,276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 .com/seouleducation	구독자수	39,910	52,296	51,755	
카카오톡채널	https://pf.kakao.com/ _lxmgyxl	구독자수	8,051	10,188	9,923	
트위터	https://twitter.com/go od_sen	구독자수	14,579	13,530	13,422	
뉴스레터3)		1회당 일반인	12,532	13,341	14,664	
	http://enews.sen.go.kr		(51회)	(23회)	(7회)	
	/use/mailservice.do	1회당 교직원	7,583 (51회)	109,550 (22회)	교직원 전체 (8회)	

따라서 정책메일서비스 제도의 운영확대를 통한 교육정보 제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뉴스레터·서울교육 유튜브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보고」에서 뉴스레터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 '홍보부족'과 '구성과 내용'상의 문제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음.

³⁾ 뉴스레터 발송 인원은 2018~2019년까지는 연도 말 기준이며 2020년은 4월 8일 기준임.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Ⅲ.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 .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서울교육정책 참여 유도와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 2. "인터넷 매체"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및 「교육자치법」제32조,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과 교육 지원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운영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매체를 말한다.
 - 가. 홈페이지 등 인터넷 활용공간
 - 나. 스마트폰 기반의 앱
 - 다. 블로그, SNS 등 소셜 미디어 서비스
- 3. "이용자"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4.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 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따라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 5. "전자민원창구"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운

- 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 6. "정책메일서비스"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서울교육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 제공하는 정보를 말한다.
- 제3조(인터넷 매체의 운영) ① 서울특별시교육감, 교육지원청교육장, 직속 기관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운영하는 사항과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요 정책 및 업무 추진 현황 등의 행정 정보
 - 2. 전자민원창구 운영
 - 3. 시민의 교육정책 참여를 위한 게시판 운영
 - 4. 국내외 홍보 및 정보 교류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교육과 관련된 정보
 - ② 기관의 장은 인터넷 매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기관의 장은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 자문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인터넷 매체 정보 관리) ① 기관의 장은 인터넷 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제공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기관의 장은 인터넷 매체에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를 표시하는 등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 ③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터넷 매체 정보 관리에 대하여 연 1회 평가를 실시하고, 정보 관리 우수기관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인터넷 매체 게시물 관리) 기관의 장은 인터넷 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인터넷 매체에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다.
 -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 특정 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 6.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8.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동일한 내용이나 유사 내용을 반복하여 도배성의 글을 올리는 경우
- 9. 연습성, 장난성의 글인 경우
- 10. 그 밖에 해당 인터넷 매체 취지와 맞지 않는 경우
- 제6조(인터넷 의견 교환 창구의 운영) 교육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교육정책 참여 유도와 열린 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이용자와 인터넷으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자 참여 행사의 운영) ① 기관의 장은 인터넷 매체 이용자의 적극적인 교육정책 참여 또는 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터넷 매체에 이용자 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 1. 주요 정책사업·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 2.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 3.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 4. 그 밖에 교육정책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 ②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③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상품권 등의 종류·액수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 기간 전에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시민 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① 기관의 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교육정책 참여 또는 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홈페이지 이용자에게 별표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누적된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1. 교통카드
 - 2. 모바일서비스
 - 3. 도서문화상품권
 - 4. 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수단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것
 - ② 제1항에 따른 누적 마일리지의 사용에는 유효기한을 두되, 이는 예산

- 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 ③ 기관의 장은 마일리지의 사용 방법 및 그 밖에 마일리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9조(정책메일서비스 제공 및 설문 조사) ① 교육감은 수신 동의한 이용자에게 교육정책 및 다양한 교육 정보를 메일 서비스로 제공하여 교육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교육감은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고객 만족도를 측정하고, 문제점을 발굴·개선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 넷 매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마일리지 부여기준 (제8조 관련)

구 분	대 상	부 여 점 수	부여 방법
1. 회원 가입	홈페이지 회원 신규 가입자	500점	최초 가입 시 1회
2. 로그인	홈페이지 방문자	10점	1일 1회
3. 개인정보 수정	홈페이지 개인 정보를 수정한 자	10점	연 1회
4. 뉴스레터 열람	뉴스레터 열람자	10점	이메일에서 열람 때만 인정
5. 설문조사 참여	설문조사 참여자	100점	회당 1회
6. 글·사진 및 동영상의 게시	글·사진 및 동영상을 게시한 자(게시물은 직접 교육정책 참여와 관련된 것 으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것)	50점 이상 500점 이하	게시물별로 각각 승인처리 하여 점수를 부여하되, 해 당 게시물 운영 홈페이지에 서 1인 1일당 1건의 게시물 에 한정하여 점수를 부여 한다

주 : 위 점수의 1점은 1원에 상당하는 액수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했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 정 안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홈페이지 이 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하고 시민의 교육정책 참여를 유 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서 울교육정책 참여 유도와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1. (현행과 같음)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 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홈페이지(외국어 홈페이지를 | <삭 제> 포함한다. 이하 같다)"란 서울특 별시교육청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 육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에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하다.

<신 설>

3. "이용자"란 서울특별시교육청 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2. "인터넷 매체"란 인터넷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 시교육청(본청 및 「교육자치 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운 영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매체를 말한다.

가. 홈페이지 등 인터넷 활용 공간

나. 스마트폰 기반의 앱 다. 블로그, SNS 등 소셜 미디 어 서비스

3. "이용자"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을 말한다.

4.	"정	보"팀	반 공	・공フ]관이] 직	무	상
직	-성	또는	: 취	득히	여	관리	하	卫
있	는	문	너·도	면·ㅅ	ŀ진·	필름	· 테	0]
$\overline{\Sigma}$	·슬	라이	드 및	및 컨	컴퓨터	를 에	叫	라
처	리되	티는	매체	등	에 >	기록된	틴 .	사
힝	-을	말한	다.					

4. (현행과 같음)

5. "전자민원창구"란 인터넷민원 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 다.

5. ----- 인터넷 민워

6. "정책고객"이란 PCRM(정책고 <삭 제> 객관계관리: Policy Customer R elationship Management) 서비 스에 대한 수신 동의 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한 고객을 말한다.

7. "정책메일서비스"란 서울특별 시교육청에서 서울교육정책 등 을 홍보하기 위해 제공하는 정 보를 말한다.

6. (현행과 같음)

제3조(홈페이지의 운영) ① 서울특 제3조(인터넷 매체의 운영) ① ---별시교육감, 교육지원청교육장,

직속기관장(이하 <u>"기관장"</u>이라 한다)이 <u>홈페이지</u>를 통하여 운영 하는 사항과 제공하는 정보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 1. <u>서울특별시교육청의 주요정책</u> 및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 2. 전자민원 창구 운영
- 3. 시민의 <u>교육정책참여</u>를 위한 게시판 운영
- 4. <u>국내·외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의</u> 홍보 및 정보교류
- 5. 그 밖에 교육과 관련된 정보
- ② 기관장은 홈페이지의 효율적

 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u>기관장은 홈페이지 운영 활성</u> 화를 위하여 <u>이용자들의 의견을</u> 수렴하거나 <u>외부자문</u>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기관의 장"
인터넷 매체
<u>.</u>

- 1. 주요 정책 및 업무 추진 현황 등의 행정 정보
 - 2. 전자민원창구 ----
 - 3. --- 교육정책 참여 -----
- 4. 국내외 홍보 및 정보 교류에 관한 사항
- 5. (현행과 같음)
- ② 기관의 장은 인터넷 매체의 ------외부 전문기관 -----
- ③ 기관의 장은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를 -- 이용자 의견을 ----- 외부 자문 ----

----**.**

- 제4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기관 장은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제공되도록 관리하여 야 한다.
 - ② <u>기관장은 홈페이지에</u> 정보를 <u>게시하는 때</u>에는 담당부서를 표 시하는 등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 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 ③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 감"이라 한다)은 <u>홈페이지 정보</u> 관리에 대하여 연 1회 평가를 실 시하고, <u>정보관리</u> 우수기관에 혜 택을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기관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 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 할 수 있다.

제4조(인터넷 매체 정보 관리) ① 기관의 장은 인터넷 매체에
 3 인터넷 매체 정보
관리에
기관의 장은 인터넷 매체의 인터넷 매체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 1. (현행과 같음) 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2. (현행과 같음) 경우 3. 특정 기관·단체, 부서를 근거 3. 특정 기관, 단체, 부서-----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 4. (현행과 같음) 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 목적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용인 경우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7. (현행과 같음)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8.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8. ----- 사람이 동일한 내용이나 유사 내용을 동일 또는 유사내용을 반복하여 반복하여 도배성의 글을 올리는 게재하는 도배성 글 경우 9. 연습성, 장난성의 글 9. ----- 글인 경 우 10. 그 밖에 해당 인터넷 매체 10. 그밖에 해당 게시판의 취지

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취지와 맞지 않는 경우

제6조(열린 교육감실 나도 교육감 제6조(인터넷 의견 교환 창구의 운 운영) 교육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교육정책 참여유도와 열린 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이 용자와 인터넷으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열린 교육감실 나 도 교육감"창구를 운영할 수 있 다.

---- 교육정 책 참여 유도 -----별도의 -----

제7조(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① 제7조(이용자 참여 행사의 운영) 기관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교육정책 참여 또는 홍 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홈페이 지에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① 기관의 장은 인터넷 매체 이 용자의 -----인터 넷 매체에 이용자 참여 행사를 -

- 1. 주요 정책사업·계획 및 업무 1. (현행과 같음)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 2.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기념하 2. (현행과 같음)

고자 하는 경우 3.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 3. (현행과 같음) 고자 하는 경우 4. 그밖에 교육정책을 홍보하거 4. 그 밖에 -----나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 ② 기관의 장 -----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 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 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 ③ 기관의 장 -----는 상품권 등의 종류·액수 그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 행사 간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 기간 전에 인터넷 매체를 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① 제8조(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① 기관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기관의 장 -----적극적인 교육정책 참여 또는 홍 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별표에 의거하여 마일리지를 부 -- 별표에 따라 -----여하고, 누적된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교통카드 모바일서비스 도서문화상품권 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수단 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것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누적 마일리지의 <u>사용에 대하여는</u> 유효기한을 두되, 이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② 사용에는
③ <u>기관장은 마일리지 사용방법</u> 및 그 밖에 마일리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홈페 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기관의 장은 마일리지의 사용 방법
제9조(정책메일서비스 제공 및 설 문조사) ① 교육감은 <u>정책고객에</u> 게 교육정책 및 다양한 <u>교육정보</u> 를 <u>메일서비스</u> 로 제공하여 <u>교육</u> 정책 참여를 유도한다.	제9조(정책메일서비스 제공 및 설문 조사) ① 수신 동의한이용자에게 교육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정책메일서비스 발송은 수신 < 제>

동의한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한	
<u>다.</u>	
③ 교육감은 <u>설문조사</u> 를_실시하	② 설문 조사
여 <u>정책고객만족도</u> 를 측정하고,	- 고객 만족도
문제점을 발굴·개선하여야 한다.	<u>.</u>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	제10조 (시행규칙)
정한 사항 이외에 서울특별시교	
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필	인터넷 매체 운영
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